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2. 7 선고 2017나10673 판결 [매매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2. 7 선고 2017나1067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100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 선고 2018. 2. 7.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100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14. 제주시 B 전

846m²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나. 4)항 부분(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권

판사이장욱

판사정희엽